

황보수정 선생님 「통합민법조문」 제3판
 사용자를 위한 정오표① (2018-04-26)

p.614 누락된 제827조 조문박스 추가

기존	<p>제826조의2(성년의제)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.</p> <p>기출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대리권에 제한을 가할 수 있으나, 그 제한으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.(○) <사시 2007></p>
수정	<p>제826조의2(성년의제)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.</p> <p>제827조(부부 간의 가사대리권) ①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. ② 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</p> <p>기출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대리권에 제한을 가할 수 있으나, 그 제한으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.(○) <사시 2007></p>